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3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 배민규
변호사 채석현, 최문영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철, 박현민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6,908,72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39』

【공범과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 사이인 C, D와 함께 불상의 대부중개업자가 모집한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다음 위 대출희망자 상대로 대출상담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대상자에 대해 고금리로 단기 대부를 하기로 하고, E(피고인의 사촌동생), F(D의 지인), G(E의 친구), H(D의 후배)를 순차적으로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D은 2020. 12.경 직원인 E에게 D이 관리하던 채무자들을 인계하고, 2021. 5.경 피고인 등과의 공동 대부업 관계에서 이탈한 후 I과 함께 별도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위 D, I의 대부업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C, D(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E(2021. 5.경부터)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J', 'K' 등의 상호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일명 '대포폰' 및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L 과장', D은 'M 팀장', E는 'N(O)' 또는 'P 팀장', G는 'Q 팀장', H는 'R 대리'로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을 대부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한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각자 거래하는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그 곳에서 모집한 대출희망자에게 대부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금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이하 '대출희망자 DB')를 제공받아 다른 공범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며 대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부금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E는 대출 대



상자 면담, 변제 독촉 및 수금 역할(2018. 11.경부터)과 대부금 자금 제공(2021. 5.경부터) 역할을, F(2019. 1.경부터 2024. 10.경까지), G(2020. 2.경부터 2024. 10.경까지), H(2020. 3.경부터 2024. 10.경까지)는 각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대상자 면담, 변제 독촉 및 수금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 D, E는 각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직원 F, G, H는 실적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22. 초순경 D과 I이 공동 영위하고 있던 대부업에 추가로 가담하면서 대부금 자금을 제공하며, D(2022. 5.경까지), I은 대부금 자금 제공, 대출 대상자 면담, 변제 독촉 및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그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C, D, E 등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C, D(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E(2021. 5.경부터)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구입한 대출희망자 DB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S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는 2019. 8.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S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자신을 'P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S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24. 10.경까지 S 등 총 31명에게 합계 172억 6,125만 원을 대부하고, 230억 6,4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E(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E(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S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88.3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4. 10.경까지 S 등 총 31명에게 합계 172억 6,125만 원을 대부하고, 230억 6,4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E(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 E, F 등은 대출 대상자들을 대면하기 전 등본, 인감,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주거래은행 3개월 내역을 미리 받아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60일 내지 90일 기간 동안 매일, 매주 또는 보름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상자들 중 다른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에게 '대부받은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 전 중도 상환하면 고액을 저금리, 월납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금 전액을 상환받으면 연락을 끊고 추가 대부를 해주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V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J L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2, 3회 고금리 일수를 사용하시다가 만기일 전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하면 3억 원을 저금리(1년 17%) 월납 조건으로 다시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대부금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시 상환을 받더라도 추가로 3억 원을 대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11. 5. 경 '(주)W'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6. 14.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I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I, D(2022. 5.경까지)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은 2022. 5. 23.경 서울 용산구 Y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구입한 대출희망자 DB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필요한 Z에게 전화한 다음 자신을 'AA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Z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5. 23.경부터 2022. 5. 30.경까지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2. 13.경까지 Z에게 합계 4억 9,610만 원을 대부하고 합계 7억 3,42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5. 23.경 서울 용산구 Y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향 기재와 같이 Z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5. 23.경부터 2022. 5. 30.경까지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79.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2. 13.경까지 Z에게 합계 4억 9,610만 원을 대 부하고 합계 7억 3,42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D, S, V,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B,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Z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J 전화통화)

1. BK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명령 대상범죄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계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뒤 연락을 끊고 다시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대부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추징을 금지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각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위 각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중대범죄인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9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1022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영(기소), 김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주성범

배상신청인 B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5고단339 판결 및 2025초기
31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2,465,58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대부 및 피해자 E에 대한 추가대부(원심 판결 범죄일람
표1 연번 172 내지 174)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범들이 대부 거래를 진행하였을 뿐이
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오피스텔 캐리어에 있는 현금 중에는 피고인의 아
버지 소유의 것(띠지로 묶인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현금 모두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몰수한다면,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수익금(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추징을 금지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F, G(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2021. 5.경부터)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이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구입한 대출희망자 DB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C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는 2019. 8.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자신을 'J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및 연번 172 내지 174 기재와 같이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88.3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및 연번 172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2021. 5.경부터)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K, G(2022. 5.경까지)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은 2022. 5. 23.경 서울 용산구 L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구입한 대출희망자 DB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필요한 D에게 전화한 다음 자신을 'M 팀장'이라고 소개하고 D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5. 23.경부터 2022. 5. 30.경까지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함께 5,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2. 5. 23.경 서울 용산구 L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향 기재와 같이 D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5. 23.경부터 2022. 5. 30.경까지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함께 5,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79.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의 각 대부거래 및 피해자 E에 대한 추가대부거래(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172 내지 174 기재 각 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F, G, H 등 공범들과 공동하여 운영한 대부업체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위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자(소위 DB권자)가 대출희망자를 중개하여 주면, 피고인 등 중 대부거래를 희망하는 자가 대출희망자와 연락하여 면담을 거친 뒤 대부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위 대부업체는 피고인 등과 같이 대부금을 마련하는 소위 사장들과 이에 고용된 직원들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장들과 직원들은 모두 대출 희망자 면담 등 대부거래 성사 관련 업무, 수금 업무 등 업무수행내역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 등 공범들은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희망자가 운영하는 사업 종류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거래의 수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 등 공범들 중 대부거래를 희망하는 자가 대출희망자와 대부거래를 하였는데, 공동으로 대부금을 마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부거래를 하거나, 대부금을 단독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부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부거래의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특정 대부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 소위 사장들은, 공동으로 대부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금을 마련하여 대부거래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수익금을 배분하였고, 단독으로 대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익금은 단독으로 대부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 직원들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등 공범들의 대부업체 운영 형태, 수익 귀속방식에 더하여 증인 H, R, K의 당심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 대한 대부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H는 당심 법정에서 'K으로부터 대부업 관련 업무를 배운 다음 2018년 여름 경 G의 직원으로서 대부업 관련 일을 시작하였다', '2018. 11.경 G, F, A과 함께 이 사건 대부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도 G의 직원이었다', 'G은 2020년 말경 F, A과의 대부업 운영 관계에서 탈퇴하고, 본인은 2020년 말경 또는 2021년 초경에 G이 관리하는 DB를 인계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C에 대한 대부거래는 G의 밑에서 일할 때 대부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피고인과는 관련 없다'라고 진술하고, C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저희가 거래하는 자체가 기업형 대부분 거래를 하고, 실제 짧은 시간 내에 최초의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볼 때 30분에서 1시간가량에 그 사람의 인성이 라든지 그리고 매출 내역, 법인 자료 이런 거를 보고 직접적으로 제가 얼굴을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아무 소액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기억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R는 당심 법정에서 '2020. 2.경부터 2023. 10.경까지 G, F,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하였고, 2023. 11.경부터는 단독으로 일을 하였다', '2023. 11.경부터는 E의 DB(E에 대한 권리, 소위 대부권)를 가져오기로 하였고, E에 대하여 2023. 11.경 이후에 대출이 나간 게 있다면 피고인, F, H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출이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2023년 11월 이후부터는 혼자 대부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대출을 실행한 적 없다. 기존 고객 대출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들은 공범들이랑 같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의미에 대하여 묻자, "신규로 나간 것이 없다"는 것은 "DB 사온 것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출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이고, "기존 고객들의 대출이 계속 현재까지 이어진 것들은 공범들과 같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는 "2023. 11.경 독립하여 일을 하면서 2023. 10.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대출했던 사람들 외에 신규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준 것은 없고, 11.경부터는 위와 같이 공범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출을 나 혼자 관리했고, 공범들이 관여하진 않았다"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K은 당심 법정에서, 'G과 함께 2022년 초순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2022. 5.경 추가로 함께 하게 되었다',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G, 피고인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진행한 때도 있었지만 건건에 따라서는 각각 단독으로 대부 거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D은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부터 거래하던 사람으로 G과 3번 거래를 같이 나갔고, 이후에는 혼자 나갔다', '피고인이 G과 저의 대부업 관계에 가담한 이후에도 D을 상대로 한 대부거래는 G과 공동으로 또는 제 단독으로 계속 거래를 했다', 'G과 저의 D에 대한 대출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재금을 분담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건 없다', '피고인하고 돈 빌려주고 할 때 사용하던 계좌를 D과 거래할



때 사용했을 뿐, D에게 돈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자 받고 수익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한 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 R, K의 당심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H, R, K이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H, R, K의 진술이 모두 같은 취지로서 서로 부합하는 점¹⁾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대부금은 현금으로 전달되었는데, 위 대부금이 피고인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부거래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E, D에 대한 대부금은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역시 계좌 송금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제공한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등 공범들은 수십 개의 법인 및 개인 차명계좌들을 서로 공유하며 각자 개개의 대부거래마다 그때그때 사용하였는바, 위 계좌들 중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함께 위 피해자들과의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등 공범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G이 5,000만 원 대출을 완료하였다는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B 중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전달해 주면 피고인 등 공범들 중 대부를 희망하는 자가 대부거래로 나아가는 구조인 점, 피고인 등 공범들은 수익성 등에 비추어 대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

1) 예컨대, H는 당심 법정에서 'R가 독립하면서 E에 대한 DB는 R가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이후부터는 R 단독으로 E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출회망자(C)에 대한 대출성사 여부를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의 대부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나.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익금(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



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몰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피스텔(대구 중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압수된 오만원권 11,901매(증 제4호) 중 은행에서 띠지를 묶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돈이고, 고무줄에 묶여있는 것은 피고인의 대부업과 관련된 원금과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5. 1. 8.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돈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이유에 대하여 '금시세가 매일매일 다르다보니 금이 쌀 때 금도매업을 아버지가 오피스텔에 와서 돈을 가져가서 현금으로 금을 사기도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위 답변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고, 실제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오피스텔에 출입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위 현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단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만약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피스텔에 6억 원을 보관하였다면, 현금의 소유관계를 구별할만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띠지와 도장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처남인 U과 통화하면서 캐리어에 5억 8,000만 원이 있다는 식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2025. 1. 7. 검찰 조사 시 자본금(소위 시재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2018. 11.경 처음 가담했을 때에는 요식업 등으로 번 돈과 대출을 받아 약 1~2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시작하였다', '2022년경 K, G과 별도로 대부업을 할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수입 명목으로 6억 원을 빌려서 K, G에게 각 2억 원씩 대여해주는 형태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은 2025. 1. 8.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으로 받은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이나 차량에 보관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과 세무사 직원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년 요식업을 운영함에 따른 총 매출은 5억 5,000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의 범행은 2019. 10. 25.경부터 2024. 10. 26.까지 이루어졌는바, 초기에는 현금에 자본금(시재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모두 수익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²⁾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압수된 현금(증

2) 아래 추정금 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도 하다.



제1 내지 4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으로, 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금 2,036,908,727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오만원권 11,701매(증 제4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대구 수성구 V, W호)에서 각 압수된 현금 오만원권 30매(증 제1호), 현금 오만원권 171매(증 제2호)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자금을 세탁하려는 행위를 계획한 점(피고인과 U의 통화내역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미화 100달러권 23매(증 제3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징함에 있어서 위 몰수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 1,880,763,047원³⁾[=범죄일람표1 기재 수익금 합계 5,642,289,142원 ÷ 3명{피고인, F, G(탈퇴 후 H) 사이 범죄수익금 분배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균등하게 3명 몫으로 안분함.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F, G, H 4명 몫을 안분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H는 G이 피고인과의 대부업 운영관계를 탈퇴하면서 G이 관리하는 DB를 인계받았을 뿐이므로(H에 대한 당심 법정진술 참조), 3명 몫의 수익을 안분함이 타당하다]]에서 위 현금 등 합계 598,297,460원[=595,100,000원

3) 원 미만은 버림



(=50,000원 × 11,902매)+3,197,460원⁴⁾]을 공제한 1,282,465,587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2,036,908,727원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 제4쪽 6행의 'C'을 'X'으로 변경하고, 7행의 'H는 2019. 8. 28.경 인천

4) 증제3호(100달러권 23매, 즉 2,300달러)의 경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5. 8. 19.자 Y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390.20원을 적용한 3,197,460원(=2,300달러 × 1,390.20원, 원 미만은 버림)으로 계산하였다.



부평구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자신을 'J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24. 10.경까지 C 등 총 31명에게 합계 172억 6,125만 원을 대부하고, 230억 6,4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를 '피고인은 2019.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위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자신을 'AB 과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X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00만 원,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2. 24.까지 4,8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24. 10.경까지 X 등 총 30명에게 합계 169억 4,265만 원을 대부하고, 226억 9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금전 대출을 업으로 하였다'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0. 24.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88.3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4. 10.경까지 C 등 총 31명에게 합계 172억 6,125만 원을 대부하고, 230억 6,4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를 'X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00만 원,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3,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9. 12. 24.까지 4,86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82.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4. 10.경까지 X 등 총 30명에게 합



계 169억 4,265만 원을 대부하고, 226억 93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 제6쪽의 '2. K과의 공동범행' 이하를 삭제한다.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4, 연번 172 내지 174를 삭제하고, 합계란의 '19,841,700,000', '17,261,250,000', '23,064,000,000', '5,773,314,888', '2,541,560,000'을 각 '19,476,700,000', '16,942,650,000', '22,609,300,000', '5,642,289,142', '2,309,060,00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G, X, AF, AG, AH, AI, AE, AJ, AK, AL, AM, AN, AO, AP, AQ, AR, B, AC, AS, AT, AD, AU, AV, AW, AX, AY, AZ, BA, E,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C 전화통화)

1. B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위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고, 그 횟수 및 금액 또한 상당한바, 이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3명(AS, AO, BE)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고, 원심 및 당심을 거치면서 나머지 피해자 2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피해자 E에 대한 미등록대부업 영위,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해자 C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대부거래, 피해자 D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대부거래, 피해자 E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2 내지 174 기재 각 대부거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본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본문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171 기재 대부거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1

재판장 판사 채성호 _____

 판사 권재호 _____

 판사 안정현 _____